

1997. 3. 29

조례정비안

제천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조례정비 추진상황

총대상	개정안			비고
	계	조례	규칙	
141	47	46	1	

2. 소관별 추진상황

소관별	총대상	개정안			비고
		계	조례	규칙	
계	141	47	46	1	
의회	13	5	4	1	
담당관	17	7	7	-	
총무국	34	14	14	-	
사회환경국	19	7	7	-	
산업경제국	13	-	-	-	
건설도시국	20	7	7	-	
직속기관	6	2	2	-	
사업소	11	3	3	-	
읍·면·동	8	2	2	-	

목 차

<제 1 반>

1.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	47
2. 제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	50
3. 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	55
4. 제천시의회의 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	58
5. 제천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중개정규칙안	63
6.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개정조례안	66
7. 제천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 관리에 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	69
8. 제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개정조례안	72
9. 제천시 국민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의 공급 조건 및 관리 조례 중개정조례안	76
10. 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중개정조례안	79
11.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개정조례안	82
12. 제천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개정조례안	85
13.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중개정조례안	88
14. 제천시 보건 진료 소수 가족 수가 조례 중개정조례안	92
15. 제천시 솔밭 수영장 설치 운영 조례 중개정조례안	95
16. 제천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중개정조례안	98
17.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관람료 징수 조례 중개정조례안	101

<제 2 반>

18.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7
19.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110
20.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13
21. 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116
22. 제천시민현장조례중개정조례안	122
23. 제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5
24.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28
25.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32
26.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7
27.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2
28. 제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5
29.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8
30. 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1
31. 제천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4
32.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9
33.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2
34.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65
35.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8
36. 제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1
37.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4
38. 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7

<제 3 반>

39.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83
40.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86
41.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9
42. 제천시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2
43.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5
44.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8
45.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1
46. 제천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4
47. 제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7

< 제 1 반 >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4
----------	-----

발의년월일 : '97. 3. 29
발의자 : 엄태영의원외 8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직제에 상응한 직위로 조정하고 기존조례에 누락된 “공무원의 범위”를 추가 명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누락된 “공무원의 범위” 추가 (안 제2조)

- 가. 국장 삽입
- 나. 편제개편에 따른 “실장” 삭제, “담당관” 삽입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담당관" 을 "국장·담당관" 으로 하고, 제4호 중 "실·과장" 을 "담당관·과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한
<p>제2조 (범위) (생 략)</p> <p>1. (생 략)</p> <p>2. 시장의 보조기관중 <u>담당관</u> 및 과장급</p> <p>3. (생 략)</p> <p>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시 본 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p>	<p>제2조 (범위)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_____ <u>국장·담당관</u> _____</p> <p>3. (현행과같음)</p> <p>4. _____ _____ <u>담당관·과장</u> _____</p>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 번 호	305
-------------	-----

발의년월일 : '97. 3. 29.
발의자 : 엄태영의원외 2인

1. 제안이유

상임위원회 설치로 행정사무감사를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도록 조정하며, 증인의 출석여비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구체화 및 출석여비 미지급 대상을 명시하고자 과태료처분 대상자중 전술자인 참고인까지 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에 위배되므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 상임위원회 설치로 행정사무감사를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도록 조정하고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삭제(안 제2조)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사회위원회로 명칭변경 (안 제2조)
3. 감사위원회 삭제 (안 제2조)
4. 의견진술자인 참고인까지 확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권리제한 의무부과한 것으로 “진술자”삭제 (안 제9조 제4항)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2항중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 와”를 “상임위원회가 운영사회위원회와”로 하며, 제3항중 “감사위원회”를 “감사위원”으로 한다.

제9조제4항중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를 “증언을 거부한때”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제천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국내여비규정에 해당하는” 으로 하고,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여비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및 지방공기업, 지방공단의 임직원

3. 증인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및 제20조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상임 또는 조사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감사)①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하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u>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u> 행한다.</p> <p>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u>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u>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p> <p>① ~ ③ (생 략)</p> <p>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법 제36조 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⑤ ~ ⑥ (생 략)</p> <p>제10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p> <p>① ~ ② (생 략)</p>	<p>제2조(감사)①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단서삭제)</p> <p>② -----</p> <p>----- <u>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u></p> <p>-----</p> <p>-----</p> <p>-----</p> <p>③ ----- <u>감사위원회</u>-</p> <p>-----</p> <p>-----</p> <p>-----</p>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 <u>증언</u></p> <p>----- <u>을 거부한 때도</u></p> <p>-----</p> <p>-----</p> <p>-----</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10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신 구 조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③ 법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자에 대하여는 제천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p> <p>(신 설)</p> <p>제11조(감사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p> <p>제12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3조(제척과 회피) ①(생 락) 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 ----- ----- <u>국내여비규정에 해당하는</u> ----- <u>지급할 수 있다.</u></p> <p>④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여비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의회의원</u> 2. <u>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및 지방공기업, 지방공단의 임직원</u> 3. <u>증인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u> <p>제11조(감사또는 조사의 장소) ----- ----- <u>상임 또는 조사위원회</u> ----- ----- -----.</p> <p>제12조(공개의 원칙) ----- ----- <u>상임 또는 조사위원회</u> ----- -----.</p> <p>제13조(제척과 회피) ①(현행과 같음) ② ----- <u>상임 또는 조사위원회</u> ----- ----- ----- -----.</p>

신구조대비표

현 행	기 정 안
<p>③ (생 략)</p> <p>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p> <p>제17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 ③(생 략)</p> <p>제20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와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p>④ ----- -----상임 또는 조사위원회----- -----</p> <p>제17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상임 또는 조사위원회 ----- ----- ----- ----- -----.</p> <p>② ~ ③(현행과 같음)</p> <p>제20조(준용규정) 상임 또는 조사위원회----- ----- -----.</p>

제천시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6
----------	-----

발의년월일 : '97. 3. 29
발의자 : 업태영의원외 2인

1. 제안이유

민간인에 대한 여비규정과 부합됨으로 명확하게 하기위함

2. 주요골자

공무원여비규정은 공무원에 국한됨으로 국내여비규정 적용 (안 제13조)

제천시결산검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결산검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단서중 "공무원 여비규정"을 "국내여비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p> <hr/>	<p>제13조 (지급기준) —————— ————— ————— ————— 국내여비규정 ——————.</p>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7
----------	-----

발의년월일 : '97. 3. 29
발의자 : 엄태영의원외 2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용어를 일치시키고 위원장이 이중표결행사로 회의원칙의 형평성 기여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의 개정으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수정
(안 제2조및 제4조)
- 나. 위원장이 이중표결로 회의원칙에 불부합함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 결정사항 삭제(안 제13조 제2항)
- 다. 별지서식 1,2호 누락으로 보완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보상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생 략) 	<p>제2조 (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회의수당" —————— "회의수당" —————— . 3. (현행과 같음)
<p>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3. (생 략) <p>② (생 략)</p> <p>제13조 (보상심의회의) ① (생 략)</p> <p>② 보상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다.</p> <p>③ (생 략)</p>	<p>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회의수당 —————— ————— 회의수당 —————— ————— . 2. —————— ————— 회의수당 —————— ————— . 3. (현행과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 (보상심의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보상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별지 제1호서식]

접 수	제 호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처 리 기 간 15일
청 구 자	보상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전 화 번 호
		청구내용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상해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계 번 호	
상 병 장 소	상병연월시				
<p>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청 구 인 (인장 또는 서명)</p>					
<p>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경위서 1부, 사망진단서 1부</p> <p>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p> <p>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공통)</p>					
<p>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제천시의회의장 직인</p> <p>제 천 시 장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리기간 즉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상대상의원	보상금 청구 내용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상해	
사망·장애·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 위 조사내용					
심의회 심의 결과		<p><결정></p> <p><결정이유></p> <p><심의위원 서명></p>			
<p>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천시장 귀하</p>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증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308
------------	-----

발의년월일 : '97. 3. 29.
발 의 자 : 엄태영의원 외 8 인

1. 제안이유

의원배지가 타 시군의회와 비교시 크기와 모양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 동일하게 하고자 개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 가. 모형 및 제식에서 모형의 크기를 “1.8cm”에서 “1.6cm”로 한다. (별표2)
- 나. 규격에서 무궁화형 5지 규격을 “1.8cm”에서 “1.6cm”로 한다. (별표2)
- 다. “화대형 5지 1.4cm”를 삭제한다. (별표2)

제천시의회기 및 원배지

제천시의회에서 의장을 관할 개정하고 제천시의회기 및 원배지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는
1. 기준 2. 제천시의회기 및 원배지에 대한 규칙 ^{(별표 2) 5, 16.}
제천시의회기 및 원배지에 대한 규칙은

제천시의회기 및 원배지에 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가. 모형 및 제식”의 “1.8cm를 1.6cm”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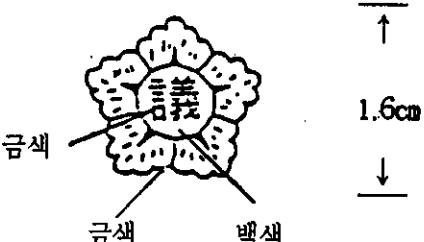
“별표2”중 “나. 규격”의 “무궁화형 5지 1.8cm”를 “1.6cm”로 한다.

“별표2”중 “나. 규격”의 “화대형 5지 1.4cm”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2 의원배지제식 가. 모형및 제식	별표2 의원배지제식 가. 모형및 제식		
 금색 금색 백색	 금색 금색 백색		
나. 규격	나. 규격		
모형내용	규격	모형내용	규격
무궁화형 화대형 화반원형 원자막	5지 5지 1 讚	1.8cm 1.4cm 1.0cm 0.8cm	5지 1 1 0.8cm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월일 번호	309
----------	-----

발의년월일 : '97. 3. 29
발의자 : 이영재의원회 8인

1. 제안이유

회의록내용의 충실을 기하고자 간사의 회의록 서명을 규정하여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회의록 작성내용을 제시하고 간사가 회의록 서명 보존관리도록 규정
(안 제8조 제1항, 2항)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회의록)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u>제8조(회의록)</u>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개회·폐회일시및장소</u> <u>2. 출석위원회성명</u> <u>3. 심의사항</u> <u>4. 토의진행상황</u> <u>5. 위원발언내용</u> <u>6. 심의결과</u> <u>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②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한다.</p>

제천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 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0
----------	-----

발의년월일 : '97. 3. 29
발 의 자 : 이영체의원외 8인

1. 제안이유

조례제명의 불분명한 자구를 정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립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제천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 대한조례”를 “제천시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등 관리에 대한조례”로 하여 조례제명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조례제명)
- 나. 일부 불합리한 문구삭제 (안 제1조)

제천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천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천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천시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 관리에 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8조 및" 다음에 "제1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명 : 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 조례</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2 제12조의2,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명 : 제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 관리에대한조례</p> <p>제1조 (목적) _____</p> <p>_____ 제8조 및 제12조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1
----------	-----

발의년월일 : '97. 3. 29
발의자 : 이영재의원외 8인

1. 제안이유

농촌주택사업의 용어정의를 명백히 규정하고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아 조례의 체계를 정비코자함

2. 주요골자

- 가. 표기의 정정및 개념의 명확한 정립 (안 제1조)
- 나. 농촌주택사업 용어정의의 신설 (안 제2조)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11조 제3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중 제1호내지 제2호를 제2호내지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농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제천시직영 시멘트제품 가공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축(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6조제4호중 "제11조제2호"를 "제5조제2호"로 한다.

별지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의 "(제13조 관련)"을 "(제7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신 설)</p>	<p>제1조 (목적) —————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p> <p>— 제11조제1항 —————</p> <p>————— .</p> <p>제2조 (용어의 정의) —————</p> <p>————— .</p> <p>1. "농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제천시직영 시멘트가공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축(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p> <p>2. (현행 제1호와 같음)</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제6조 (특별회계의 운용제한) (생 략)</p> <p>1. ~ 3. (생 략)</p> <p>4.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p> <p>5. ~ 9. (생 략)</p>	<p>제6조 (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현행과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5조제2호 —————</p> <p>————— .</p> <p>5. ~ 9.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국민주택용자금 상환대장 <u>(제13조 관련)</u>	(별지) 국민주택용자금 상환대장 <u>(제7조 관련)</u>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2
----------	-----

발의년월일 : '97. 3. 29
발의자 : 이영재의원외 8인

1. 제안이유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아 조례의 체계를 정비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회수”를 “횟수”로 정정 (안 제2조 제3항)
- 나. 잘못된 표기를 정정 (안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회수"를 "횟수"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각호의 1호"를 "각호의1"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각호의 1"을 "각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입주자의 선정) ①~② (생 략)</p> <p>③국민주택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회수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 다만, 적은 규모의 주택을 분양받은자가 큰 규모의 주택을 새로 분양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조 (입주자의 선정) ①~②(현행과 같음)</p> <p>③_____ 횟수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제3조 (무주택 증명) ① (생 략)</p> <p>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무주택을 증명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에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입주선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 6. (생 략)</p> <p>③ ~ ④ (생 략)</p>	<p>제3조 (무주택 증명) ① (현행과 같음)</p> <p>②_____.</p> <p>_____.</p> <p>_____ 각호의 1 _____.</p> <p>_____.</p> <p>1. ~ 6.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 (입주자의 모집) ①입주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p> <p>1. ~ 10. (생 략)</p>	<p>제4조 (입주자의 모집) ①_____.</p> <p>_____ 각호 _____.</p> <p>_____.</p> <p>1. ~ 10. (현행과 같음)</p>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원번호	313
------	-----

발의년월일 : '97. 3. 29
발의자 : 이영재의원외 8인

1. 제안이유

직제 개정으로 현직제명과 일치시키고 용어순화를 위해 용어를 개정 조례체계를 정비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직제개정으로 직제명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함 (안 제4조제2항)
- 나. 용어순화를 위해 조례체계정비 (안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 다. 잘못된 표기 정정 (안제12조 제2, 3, 4항 제13조 제2항, 제15조제3, 4항)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거절하지 아니한다"를 "받아들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거절하지 아니한다"를 "받아들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호중 "전 제11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5조제3호중 "전 1, 2호"를 "제1호, 제2호"로 하고, "전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하며, 제4항중 "전 1, 2, 3호"를 "제1호, 제2호,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생 략) ② 관리자는 <u>건설국장</u> 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u>건설도시국장</u> ————— .
제5조 (조직) ① (생 략) ② <u>전항</u> 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5조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 (인사)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생 략) 1. (생 략) 2. 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3조 (재정지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생 략) 1. ~ 2. (생 략) 3. 전 1, 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 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전 1, 2, 3호를 처분하고 도 잔액이 있는 경우 8/10을 건설적립 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제2호————— 제12조제4항————— 4. ——제1호, 제2호, 제3호————— ————— .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4
----------	-----

발의년월일 : '97. 3. 29
발의자 : 이영재의원외 8인

1. 제안이유

지방세의 타세목 체납금의 규정을 고려하여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의 연체금을 체납금으로 개정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22조 “연체금”의 규정을 “가산금”으로 규정 개정하고 “아니한때에는 연리 9.6%의 연체금을 당해 사용료, 접용료 기타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를 “아니한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안 제22조)

- ※붙임 :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대비표 1부.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납된 사용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 (연체금) 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리 9.6%의 연체금을 당해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체기간이 1개월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산정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산정액이 과소하여 그 부과징수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부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2조 (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삭 제)</p> <p>(삭 제)</p>

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5
----------	-----

발의년월일 : '97. 3. 29
발의자 : 이영재의원외 8인

1. 제안이유

제23조의 특별회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특별회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특별회계”를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로 개정
(안 제2조)

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별회계"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2조중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중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 (이하 "특별회계"라한다)	제1조 (목적) 특별회계를 하수 사업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한다)로 한다. 제2조중 (이하 "특별회계"라한다)를 삭제한다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6
------	-----

발의년월일 : '97. 3. 29
발의자 : 이종호의원외 8인

1. 제안이유

- 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의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현기구 명칭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체계 정비코자 함
- 나. 입원서약서및 보증금 조항을 삭제하여 전시민이 진료를 받도록 하여 시민후생복지에 기여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해당 법규를 적용 필요한 사항규정 (안 제1조)
- 나. 정부조직개편으로 현정부조직 기구 명칭과 일치 (안 제3조, 제4조)
- 다. 보건소 진료과목에 맞게 개정(안 제6조)
- 라. 입원서약서및 보증금 조항 삭제로 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호)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증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증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단서증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증 "의치, 보철"을 "진료 및 처치"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증 "사용료"를 "진료비"로 하여 제8조로 하고,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제9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별지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 (목적) ————— 지역보건법 제14조————— ————— —————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u>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u>	제3조 (진료수가) ————— 보건복지부장관————— ————— —————
제4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u>의료보험법 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만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사회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u>	제4조 (약가)————— ————— ————— ————— ————— ————— ————— 보건복지부————— —————
제6조 (기타수가)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표1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기타수가)————— ————— ————— ————— ————— ————— ————— ————— —————
제8조 (입원서약 및 보증금) ①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이 서한 입원서약서(별지서식)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u>②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 원료의 5일 내지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u></p>	
<u>제9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생 략)</u>	<u>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u>
<u>제10조 (납부) (생 략)</u>	<u>(현행 제9조와 같음)</u>
<u>제11조 (추징) (생 략)</u>	<u>제9조 (납부) (현행 제10조와 같음)</u>
<u>제12조 (시행규칙) (생 략)</u>	<u>제10조 (추징) (현행 제11조와 같음)</u>
	<u>제11조 (시행규칙) (현행 제12조와 같음)</u>

제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의원번호	317
------	-----

발의년월일 : '97. 3. 29
발의자 : 이종호의원와 8인

1. 제안이유

정부기구개편으로 기구명칭이 변경으로 일치시켜 조례체계정비하고 적용배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정부기구개편으로 기구명칭이 변경으로 일치(안 제2조)
- 나. 적용배제 조항신설 (신설안 제3조)

제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적용배제)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 총회의 의결로서 진료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농어촌등보건 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u>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진료비기준</u> 에 의하여 산정한 진료수가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p> <p>(신 설)</p>	<p>제2조 (진료수가) —————— ————— ————— 보건복지부장관 —————— ————— —————</p> <p>제3조 (적용배제)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보 전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의 범 위안에서 협의회 총회의 의결로서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제3조 (규칙) (생략)</p>	<p>제4조 (규칙) (현행제3조와 같음)</p>

제천시술발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8
----------	-----

발의년월일 : '97. 3. 29
발 의 자 : 이종호의원외 8인

1. 제안이유

사용자의 연령을 명백히 규정하고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아 조례체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사용자의 연령을 명백히 규정 (안 제5조)
- 나. 잘못된 표기 정정 (안 제7조 제2항)

제천시술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술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단서중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노인은"을 "65세이상인 자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제7조 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o)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사용료)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입장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6세이하의 어린이와 <u>경로우대증을</u> <u>소지한 노인은 입장료를 면제한다.</u></p> <p>제7조 (준용규정) ① (생 략) ②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영장을 임대운영하는 자는 제4조제2항 내지 제7 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조 (사용료) _____ _____ 65세 이상 인자는 _____</p> <p>제7조 (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제7조 제1항 _____</p>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9
----------	-----

발의년월일 : '97. 3. 29
발 의 자 : 이종호의원의 8 인

1. 제안이유

사용자가 관람권 발행시 행사종료후 사용료 정산시 미회수된 관람권에 대하여 사용료에 대한 재규정 사항이 없어 규정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삭제하여 지역의 문예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예매분에 대한 미회수 관람권에 대한재규정이 없으므로 내용신설 (안 제10조)
- 나. 일부 불합리한 문구 삭제 (안 제2조, 제4조)

제천시조례 제 호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각호” 다음의 “의 1과”를 삭제하고, “각호” 다음에 “와”를 삽입한다.

제4조중 “각호” 다음 “의 1”을 삭제한다.

제10조 “전산납부하여야 한다”를 “정산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미회수된 관람권은 매출액으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다음 각호의 1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생 략) 	<p>제2조(용어의 정의)----- ----- <u>다음각호와</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p>제4조(사용허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 략)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전에 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p>제4조(사용허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 <u>다음</u> <u>각호</u> ----- <p>-----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p>제10조(사용료의 특별징수)③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제8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 종료후 익일 오전중까지 전산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0조(사용료의 특별징수)③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제8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종료후 익일 오전중까지 전산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미회수된 관람권은 매출액으로 본다.</p>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0
------	-----

발의년월일 : '97. 3. 29
발의자 : 이종호의원의 8인

1. 제안이유

교육법시행령개정으로 명칭을 변경시키기 위함

2. 주요골자

교육법시행령개정으로 명칭 개정 (안 제2조 제1항)

제천시조례 제 호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청풍문화재단지관람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적용범위) (생 략)</p> <p>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국민 학교학생 포함)</p> <p>2. ~ 4. (생 략)</p>	<p>제2조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p> <p>1. _____ 초등 학교 _____</p> <p>2. ~ 4. (생 략)</p>

< 제 2 반 >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1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정용만 의원외 8인

1. 제 안 이 유

부적절한 일부자구 정정

2. 주 요 골자

가. 조례명과 일치되도록 자구 정정(안 제1조)

나. 부적절하게 표현된 자구 정정(안 제3조)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위원회" 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유고시" 를 "사고가 있을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용하기 위하여 시에 <u>지방재정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생략)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u>유고</u>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조 (목적) ----- ----- ----- --- <u>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u> ----- ----- -----</p> <p>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현행과 같음) ②----- --- <u>사고가 있을 때</u> -----</p>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2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정용만 의원외 8인

1. 제 안 이 유

미비점 보완하기 위함

2. 주 요 골자

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시장은 물론 의장까지 받을수 있도록 개정 (안 제3조)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시장" 을 "시장 및 의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고문사항) 고문번호사는 다음 각호 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용하여야 한다.</p> <p>1. ~ 3. (생 약)</p>	<p>제3조 (고문사항) ----- ----- 시장 및 의장 ----- -----</p> <p>1. ~ 3. (현행과 같음)</p>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3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정용만 의원외8인

1. 제 안 이 유

공개제한 규정중 광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단서조항 규정

2. 주 요 골자

가. 공개제한을 임의로 할수 없도록 공익성의 단서 부여(안 제5조 제2호)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중 공개시 공익에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생략)</p> <p>1. (생략)</p> <p>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u>관한 사항</u></p> <hr/> <p>3. ~ 4. (생략)</p>	<p>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u>관한 사항</u> 중 공개시 공익에 저해가 우 려되는 경우</p> <hr/> <p>3. ~ 4. (현행과 같음)</p>

제천시기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4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정용만 의원외 8인

1. 제 안 이 유

제천시,군 통합당시 군기의 모형을 따른 것이나 글씨체, 크기, 색깔, 작도법이 표기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함

2. 주 요 골 자

- 가. 제천시기의 글씨체, 크기, 색깔, 작도법 표기및 이에 따른 자구의 정정(안 제3조, 제4조, 제5조, 별표 1, 2, 3, 4)
- 나. 자구의 정정 (안 제5조)
- 다. 휘장 수여 대상자 확대 (안 제5조)

제천시기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기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별표4" 를 "별표2" 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별표2와" 를 "별표3과" 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별표3과" 를 "별표4와" 로 하고, 제2항 제1호 중 "시행정" 을 "시정" 으로 하며,
제2호 내지 제3호를 제3호 내지 제4호로 하며,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천시 문화상을 수상하는 자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권 기획 제2장 문화공보 제진시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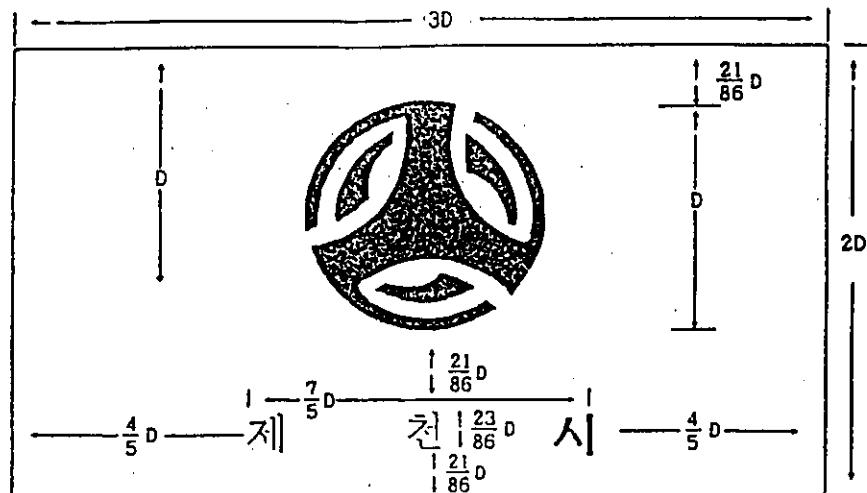
(면지서식)

희 장 증 이 대 장

번호	증이일자	국적	성명	주소	증여사유

(별표 1)

제 천 시 기



D (Diameter 의 약자 - 모형의 직경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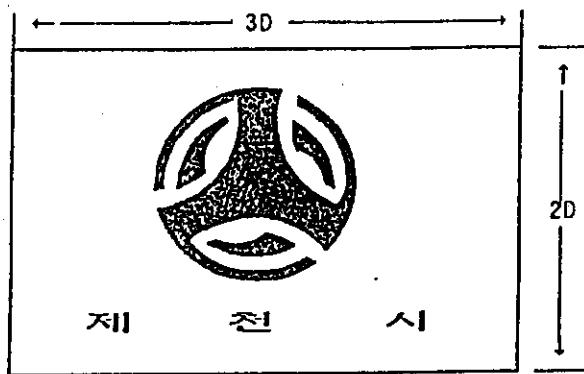
바탕 : 짙은 청색

원 : 백색

글씨 : 백색 (고딕체)

제3편 기획 제2장 문화공보 제천시조례

(별표 2)



제천시기의 상징

1. 색 체

- 짙은청색바탕 : 굳건한 제천시 시민의 기상을 상징
- 흑색(모형) : 원만하고 화복히 평화를 이루는 시민의 의지의 나타냄

2. 내용 설명



은 제천시의 첫자인 「ㅈ」을 표시함과 동시에



은 제천시의 「川」을 의미함과 아울러



은 용이 여의주를 일어 활발하게 생동하는 것을
상징하며

제3편 기획 제2장 문화공보 제천시조례

(별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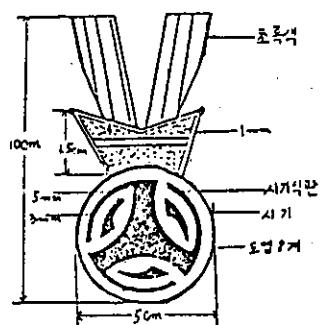


문 장

(제작 내용)

- 발표 1의 시기와 같다

(별표 4)



휘 장

(제작 내용)

- 규격 : 문장과 같음
- 재료 : 상단부 - 인견사
하단부 - 황동
- 두께 : 4mm
- 색 : 금, 은, 특수 도금
- 식판(제천시) : 두께 0.5mm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시기의 상징) ① 시기의 상징은 <u>별표 4와 같다.</u> <u>② (생략)</u></p> <p>제4조 (문장) ① 문장은 <u>별표 2와 같이</u>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 다. <u>② (생략)</u></p> <p>제5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은 <u>별표 3과 같</u> 다. <u>② (생략)</u></p> <p>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u>(신설)</u> 2. (생략) 3. (생략) <u>③ (생략)</u></p>	<p>제3조 (시기의 상징) ①----- <u>별표 2</u> ----- <u>② (현행과 같음)</u></p> <p>제4조 (문장) ① --- <u>별표 3과</u> ----- --- <u>② (현행과 같음)</u></p> <p>제5조 (휘장) ①----- <u>별표 4와</u> --- <u>② (현행과 같음)</u></p> <p>1. 시정 ----- <u>2. 제천시 문화상을 수상하는 자</u> <u>3. (현행 제2호와 같음)</u> <u>4. (현행 제3호와 같음)</u> <u>③ (현행과 같음)</u></p>

제천시민헌장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5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정용만 의원외 8인

1. 제 안 이 유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지역의 특성을 내포할 수 있으며 의미전달이 명확하고 적절한 어구로의 개정

2. 주 요 골자

가. 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어구(표현)로의 개정(안 제1조, 제천 시민헌장조례)

제천시민현장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민현장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갖게 하고"를 "드높이고"로 하고, "다짐하게"를 "실현"으로 한다.

제천시민현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천 시 민 현 장)

우리는 선열들의 빛나는 전통을 옳게 이어받아 항상 미래지향적 사고로 향토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오늘을 책임지고 있는 제천시민이다.

우리는 의와 예를 숭상하고 자애와 봉사로써 살기좋은 고장 건설에 앞장서는 제천시민이다.

우리는 청풍명월의 순박성과 구국충절의 의병창의 기상을 긍지로 삼아 인간존엄과 사회 천의에 힘쓰는 제천시민이다.

우리는 학문을 숭상하고 예술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제천시민이다.

우리는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바르게 생활하며 질서를 잘 지키는 제천시민이다.

우리는 항상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여 보다 높고 나은 내일을 열어갈 제천시민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으로서의 실천 실천규범인 시민현장을 제정하여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향토애를 갖게하고 오랜 전통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진취적인 기상으로 복지사회건설을 다짐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천시민현장)</p> <p>우리는 "내토" 아래의 오랜 전통을 읊게 이어받고 항상 발전하는 지역으로서의 무궁한 발전을 지향하면서 오늘을 책임지고 있는 제천시민이다.</p> <p>우리는 의와 예를 중시하고 자애와 봉사로써 살기좋은 고장 건설에 앞장서는 제천시민이다.</p> <p>우리는 청풍명월의 (삼임) 기상을 긍지로 삼아 인간존엄과 사회정의에 힘쓰는 제천시민이다.</p> <p>우리는 우리 학문을 숭상하고 예술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제천시민이다.</p> <p>우리는 균면성실하게 일하고 바르게 생활하며 질서를 잘 지키는 제천시민이다.</p> <p>우리는 항상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궁리하여 미래개척을 책임질 제천시민이다.</p>	<p>제1조 (목적) ----- ----- ----- 드높이고 ----- ----- ----- 실현 ----- -----</p> <p>(제천시민현장)</p> <p>우리는 선열들의 빛나는 전통을 읊게 이어받아 항상 미래지향적 사고로 향토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오늘을 책임지고 있는 제천시민이다.</p> <p>우리는 의와 예를 숭상하고 자애와 봉사로써 살기좋은 고장 건설에 앞장서는 제천시민이다.</p> <p>우리는 청풍명월의 순박성과 구국충절의 병창의 기상을 긍지로 삼아 인간존엄과 사회정의에 힘쓰는 제천시민이다.</p> <p>우리는 (삭제)학문을 숭상하고 예술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제천시민이다.</p> <p>우리는 균면성실하게 일하고 바르게 생활하며 질서를 잘 지키는 제천시민이다.</p> <p>우리는 항상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여 보다 높고 나은 내일을 열어갈 제천시민이다.</p>

제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6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정용만 의원외 8인

1. 제 안 이 유

문액의 조정 및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조례시행을 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비중없이 참작토록하던 의회의견을 최종적으로 들도록 조정(안 제3조)

나. 미비되어 있던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 (안 제6조)

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 천 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조 (가로명 선정과 고시) 가로명은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 특성을 착작하되, 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 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가로명 선정과 고시) 가로명은 시의회의 의견과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특성을 참작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3조 (가로명 선정과 고시) 가로명은 지역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 특성을 참작하되, 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제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7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정용만 의원외 8인

1. 제 안 이 유

문화상 수상부문의 세분화 및 “수상대상자”를 현실성있도록 개정하여 문화상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가. 제천시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5년이상 공적이 있으면 수상대상자로 함.
(안 제2조)
- 나. 수상부문의 세분화(안 제3조)
- 다. 심사위원회 인원의 조정(안 제5조)
- 라. 문화상 시상의 중요성 강화(안 제6조)

제천시문화상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문화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상 수상대상자는 심사일 현재 제천시의 향토문화창달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공적기간이 5년이상인 자로 한다.

제3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예학술부문

4. 사회봉사부문

제5조제1항 중 "21인" 을 "28인"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과반수의 출석" 을 "2/3이상의 출석"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수상대상자) ① 문화상 수상대상자는 심사일 현재 제천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는 자(과거 5년 이상 거주하면 자가 심사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는 자 포함) 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라도 제천시의 향토문화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 (생 략)	제2조 (수상대상자) ① 문화상 수상대상자는 심사일 현재 제천시의 향토문화창달과 지 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기간이 5년 이상 인 자로 한다.
제3조 (수상부문) (생 략) 1. 문화예술부문 2. (생 략) 3. (생 략) (신 설)	제3조 (수상부문) (현행과 같음) 1. 문예학술부문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사회봉사부문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 은 시장이 문화상수상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이내에 21인이내로 위촉하며 문화 상 시상 종료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각 수상 부문별 위원은 7인 이내 로 한다. ② ~ ③ (생 략)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 28일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생략)</p> <p>② 제1항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p>	<p>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2/3이상의 출석 -----</p> <p>-----</p> <p>-----</p>

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8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정상태 의원외 8인

1. 제 안 이 유

표현이 부적절한 일부자구 정정 및 시대변천에 맞는 적절한 어구 사용,
포상범위의 확대 등으로 조례체계를 정립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가. 불필요한 토씨삭제 및 표현이 부적절한 자구 정정(안 제2조, 안 제4조, 제5조
제1항, 안 제8조 제2호,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 나. 오자정정 (안 제11조)

제천시포상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포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기관단체로 한다. ("외국인 및 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조 중 "민주시민질서상, 모범공무원포상" 을 "모범공무원포상, 시민질서상"으로 한다.

제5조 제1호 중 "시정의 발전" 을 "시정발전"으로 하고, 제4호 중 "새마을사업" 을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제8조 제2호 중 "새마을사업" 을 "사회봉사활동"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민주시민질서상" 을 "시민질서상"으로 하고, 본문 중 "민주시민질서상" 을 "시민질서상"으로 하며, "민주시민질서" 를 "시민질서"로 하고, 제5호 중 "도시질서" 를 "시민질서"로 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중 "민주시민질서상" 을 "시민질서상"으로 한다.

제11조 제4항 중 "선정화되" 를 "선정하되"로 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중 "표창권자" 를 "포상권자"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9조에 의한 시민질서상은 년 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u>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 저한 공무원, 시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 단체에 한한다.</u></p>	<p>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u>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 저한 자와 기관단체로 한다. ("외국인 및 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p>
<p>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 <u>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민주시민질 서상,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 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 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한다.</u></p>	<p>제4조 (포상의 종류) ----- ----- 모범공무원포상, 시 민질서상 ----- ----- ----- -----</p>
<p>제5조 (표창장) (생략)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u>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u> 2. (생략) 3. (생략) 4. 새마을사업 또는 대민 봉사활동에 헌 <u>신한자</u></p>	<p>제5조 (표창장) (현행과 같음) 1. 시정발전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지역개발사업 ----- -----</p>
<p>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생략) 1. (생략)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 <u>을사업에 헌신한자</u></p>	<p>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사회 봉사활동 -----</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 (<u>민주시민질서상</u>) 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u>민주시민질서 정착에</u>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에게 수여한다.</p> <p>1. ~ 4. (생 략)</p> <p>5. 기타 도시질서 확립</p> <p>제10조 (<u>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u>)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제9조에 의한 <u>민주시민질서상</u>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한다.</p> <p>② (생 략)</p> <p>③ 제9조에 의한 <u>민주시민질서상</u>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p> <p>1. ~ 5. (생 략)</p> <p>④ (생 략)</p> <p>제11조 (<u>포상절차</u>) ① ~ ③ (생 략)</p> <p>④ 제9조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 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시민 20명이 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화되어 서면 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p> <p>⑤ (생 략)</p>	<p>제9조 (<u>시민질서상</u>) 시민질서상 ----- ----- 시민질서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시민질서 ---</p> <p>제10조 (<u>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u>) ① ----- ----- ----- 시민질서상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시민질서상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 (<u>포상절차</u>)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선정하되 ----- -----</p> <p>⑤ (현행 제6항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 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표창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p> <p>③ 제9조에 의한 민주시민질서상은 년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p>	<p>제12조 (포상시기) ①----- ----- 표상권자 ----- ----- ----- ② ----- 표상권자 ----- ----- ③ 제9조에 의한 시민질서상은 년4회 매분 기 익월에 시상한다.</p>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정상태 의원외 8인

1. 제 안 이 유

수당지급액의 현실화, 불필요한 자구의 삭제

2. 주 요 골자

가. 불필요한 자구의 삭제 및 별표 일련번호의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별표)

나. 수당지급액의 현실화 (별표1, 3)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병원선승선근무공무원" 을 삭제한다.

제2조 본문중 "병원선승선근무공무원" 을 삭제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제3호중 "별표3" 을 "별표2"로 하여 이를 제2호로 한다.

제3조중 "별표4와" 를 "별표3과"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원)

지역등급	전문의	일반의
율지	695,000이하	614,000이하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원)

근무년수	등급별	가등급	나등급
5년 이상		1,012,000	673,000
4년 이상		1,006,000	667,000
3년 이상		1,000,000	661,000
2년 이상		995,000	656,000
2년 미만		989,000	650,000

〈비고〉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 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원)

지급대상	지급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180,000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150,000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120,0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일반직 의사, 전임전문직의사, 병원선승선근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남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p> <p>-----</p> <p>-----</p> <p>----- (삭제)</p> <p>-----</p> <p>-----</p> <p>-----</p> <p>-----</p>
<p>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의사, 병원선승선근무공무원 및 전임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p> <p>----- (삭제)</p> <p>-----</p> <p>-----</p>
<p>1. (생략)</p> <p>2. 병원선승선근무공무원 : [별표2]의 지급구분표</p>	<p>1. (현행과 같음)</p> <p>2. (삭제)</p>
<p>3.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3]의 지급구분표</p>	<p>2. ----- : [별표2]</p>
<p>제3조 (장려수당) 영 제19조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p>	<p>제3조 (장려수당) -----</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 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u>[별표4]</u>와 같다.</p>	<p>----- ----- ----- [별표3]과 -----</p>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0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정상태 의원외 8인

1. 제 안 이 유

미비점을 보완한 단서조항 및 항의 신설로 내실적인 조례운영을 기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가. 학년석차가 없는 경우나 신입생에게도 장학금 지급 규정신설 (안 제2조)
- 나. 의견 수렴 대상의 현실화 (안 제4조 제3항)
- 다. 오자의 정정 (안 제7조)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 학년석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개인 평균성적이 100분의 50이상인자

제4조제1항중 "교육장"을 "학교장"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신입생에 대하여 입학성적이나 입학전 배치고사 성적 또는 학교장의 추천서에 의하여
선발한다.

제7조제2항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장학생의 자격) (생 략)</p> <p>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신 설)</p>	<p>제2조 (장학생의 자격) (현행과 같음)</p> <p>1. ----- ----- ----- 단, 학년석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개인 평균성적이 100분의 50이상인 자</p>
<p>2. (생 략)</p> <p>제4조 (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③ (신 설)</p>	<p>제4조 (선발) ①----- ----- 학교장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신입생에 대하여 입학성적이나 입학전 배치고사 성적 또는 학교장의 추천서에 의하여 선발한다.</p>
<p>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생 략)</p> <p>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p>	<p>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제8조 ----- -----</p>

제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1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정상태 의원외 8인

1. 제 안 이 유

현실성 있는 시험수당을 지급하기 위함

2. 주 요 골자

가. 수당지급액의 현실화 (별표)

제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시험수당지급기준표

(단위 : 원)

수당별	구 分		수당액	비 고
출제수당	제관식	6급이하 시험 (문제당)	3,000	
	주관식	" (과목당)	45,000	
채점수당	제관식	6급이하 시험 (응시자 1인 1과목)	22	
	주관식	10부까지 기본료	30,000	
		1부 초과당	800	
면접 및 필기 시험수당	5급이상 (일당)	10명까지 기본료	30,000	상한
		10명초과 1인당	1,000	50,000
	6급이하 (일당)	10명까지 기본료	15,000	상한
		10명초과 1인당	500	50,000
	종사원 (일당)	1인당	6,000	
문제편집수당	일 당		7,000	
문제선정 심의수당	과 목 당		35,000	
감시수당	공 휴 일		10,000	
	평 일		6,500	

- 비고 : 1. 위 표는 시험수당지급기준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시험의 규모, 성질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과 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집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금작업사의 하루는 8근무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3일로 간주할 수 있다.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2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정상태 의원외 8인

1. 제 안 이 유

정책지원자금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도 이율이 5%이므로 이율의 상승이 요구됨

2. 주 요 골 자

가. 영세민 지원자금 등과 대비 형평성에 맞도록 이율의 조정(안 제5조)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연 3%"를 "연 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암
제5조 (용자한도 및 이율등) ① (생 략) ② 용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이내로 한다.	제5조 (용자한도 및 이율등) ①(현행과 같음) ②-----연 5%-----

제천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3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의자 : 정상태 의원외 8인

1. 제 안 이유

미비점 보완 및 적절한 용어의 사용

2. 주 요 골자

가. 항 신설로 미비점 보완 (안 제4조 제3항)

나. 현실적인 용어의 사용 (안 제7조 제2항)

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사회진흥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위원의 임기) ①~② (생략) <u>(신설)</u></p> <p>제7조 (간사등) ①(생략) ② 간사는 사회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③ ~ ④ (생략)</p>	<p>제4조 (위원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인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p> <p>제7조 (간사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지역개발과장</u> ----- ----- ③ ~ ④ (현행과 같음)</p>

제천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4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의자 : 정상태 의원외 8인

1. 제안 이유

준칙안대로의 표현을 개정, 부적절한 자구를 조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재정립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준칙안대로 표현된 어구를 현실성있게 개정(안 제1조, 제10조)
- 나. 불필요한 용어의 삭제(안 제2조)
- 다.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항 신설(안 제11조)
- 라. 항번호 조정 및 오자 정정, 누락 단어 삽입(안 제11조)
- 마. 부적절한 용어 개정(안 제13조)
- 바. 타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안 제24조)

제천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 천 시 체육 시설 의 설 치 및 운 영 조례 중 다음과 같 이 개 정 한 다.

제 1 조 중 "지방자치단체" 를 "제천시" 로 한다.

제 2 조 제 1 호 중 "육상경기장, 야구장, 사이클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승마장, 청구장, 궁도장, 사격장, 로라스케이트장" 을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청구장, 궁도장, 사격장" 으로 한다.

제 10 조 제 1 항 을 다음과 같 이 하 고, 제 3 항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를 "시장이 따로" 로 한다.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 11 조 제 1 항 중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를 삭제하고, 제 3 항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를 "시장이 따로" 로 하여 이를 제 4 항 으로 하 며, 제 2 항 을 제 3 항 으로 하 고, 제 2 항 을 다음과 같 이 신설 한다.

② 제 1 항에 의한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발급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그 발급량은 총 관람권 발급량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만 인정한다.

제 13 조 본문의 "각호" 를 "각호의 1" 로 하 고, 제 2 호 중 "인정하는 자" 를 "인정하는 자" 로 하 며, 제 7 호 중 "특별한 사유" 를 "공익상 특별한 사유" 로 한다.

제 24 조 중 "300원의" 를 "제천시 제중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으로 하 고, "정한다" 를 "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제천시 -----</p> <p>-----</p> <p>-----</p> <p>-----</p>
<p>제2조 (정의) (생략)</p> <p>1. "경기장"이라 함은 육상경기, 야구장 사이클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승마장, 청구장, 궁도장, 사격장, 로라스케이트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p>	<p>제2조 (정의) (현행과 같음)</p> <p>1. ----- 육상경기, 실내체육관, 수영장, 청구장, 궁도장, 사격장, 로라스케이트장 -----</p> <p>-----</p> <p>-----</p>
<p>2. ~ 12. (생략)</p>	<p>2. ~ 12. (현행과 같음)</p>
<p>제10조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 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다.</p> <p>② (생략)</p> <p>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다.</p> <p>④ (생략)</p>	<p>제10조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시장이 따로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수입의 20%(프로경기 및 체육이외의</p>	<p>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① -----</p> <p>-----</p> <p>-----</p>

현 행	개 정 안
<p>행사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신설)</p>	<p>----- (삭 제) -----</p> <p>-----</p> <p>-----</p> <p>-----</p> <p>-----</p> <p>② 제1항에 의한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발급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그 발급량은 총 관람권 발급량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만 인정한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정산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 시장이 따로 -----</p>
<p>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국가, 충청북도, 제천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도·시체육회나 제천시 교육장이 인정하는 자</p> <p>3. ~ 6. (생략)</p> <p>7.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p>	<p>제13조 (사용료의 감면) ----- 각호의 1</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인정하는 자</p> <p>3. ~ 6. (현행과 같음)</p> <p>7. ----- 공익상 특별한 사유 -----</p>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 (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300원의 수입증지를 첨부토록 정한다.</p>	<p>제24조 (수수료의 징수) ----- ----- 제천시체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하여야 한다.</p>

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35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의자 : 윤성열 의원외 8인

1. 제안이유

자구 조정

2. 주요골자

가. 조문체계와 결맞는 자구로 조정(안 제9조)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서 정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 (수수료) ① 읍·면·동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p> <p>② (생 략)</p>	<p>제9조 (수수료) ①----- ----- ----- ----- ----- 제3조에서 정한 ----- -- ② (현행과 같음)</p>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6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윤성열 의원외 8인

1. 제 안 이 유

누락분 및 체육시설 부문 삽입

2. 주 요 골자

가. 체육부문 삽입(별표1)

나. 누락된 별표 삽입(별표2 고무인)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의 2.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확인등의 나. "문화공보관계"를 "문화공보체육관계"로 하고,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5) 문화체육시설 사용신청	1 건	300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수수료 감면 사실확인 고무인

위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

1.5cm

15 cm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천시 제증명 등수수료요율표				제천시 제증명 등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1. 증명 (생 략)				1. 증명 (생 략)			
2. 인가, 허가, 신청, 등 록, 지정 확인 등 가. (생 략)				2.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공보관제				나. 문화공보체육 관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문화체육시설 사용신청	1건	300	
(이하 생 략)				(이하 현행과 같음)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7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윤성열 의원외 8인

1. 제 안 이 유

불필요한 단어 삭제 및 단서조항의 신설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함.

2. 주 요 골자

가. 불필요한 단어 삭제 (안 제5조 제1항)

나. 단서조항 신설 및 이에 따른 어구의 정정 (안 제4조, 제7조)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단,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는 제천시 세입징수관의 확인으로 결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체납액징수실적대장"을 "체납액징수대장"으로 하고, "과징실적대장"을 "과징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심사를"을 "심사 및 제천시세입징수관의 확인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심사결정) 제3조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제천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신설)</p>	<p>제4조 (심사결정) ----- ----- -----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제천시세입징수관의 확인으로 결정한다.</p>
<p>제5조 (대장비치) ① 세정과 및 읍·면·동에서는 과년도 <u>체납액징수실적대장</u> 및 숨은 세원 발굴 <u>과정실적대장을</u>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p>	<p>제5조 (대장비치) ① ----- ----- <u>체납액징수대장</u> ----- ----- <u>과정대장</u> ----- -----</p>
<p>제7조 (포상금지급) 시장은 천조의 신청서 의해 제천시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끝난 후 매분기 익월중에 포상금을 지급한다.</p>	<p>제7조 (포상금지급) ----- ----- <u>심사 및 제천시세입징수관의 확인을</u> ----- -----</p>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8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윤성열 의원외 8인

1. 제 안 이 유

불필요한 조사 삭제로 문맥을 원활히 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조사 '를'을 삭제 (안 제5조 제1항)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5조 제 1항 중 "보조금을 교부를 받고자"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보조금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6. (생 략) ② ~ ③ (생 략)</p>	<p>제5조 (보조금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 ----- -----</p> <p>1.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제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9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윤성열 의원외 8인

1. 제 안 이 유

당초 준칙안대로 하여 현실과 맞지않는 자구를 문맥상 적정한 어구로 조정

2. 주 요 골자

가. 제안사유와 같음.(안 제3조 제2항)

제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제1항의 지방의회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생략)</p> <p>②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 ----- -----</p>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0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윤성열 의원외 8인

1. 제 안 이 유

오자의 정정

2. 주 요 골자

가. 잘못 인용된 법조항을 바로 잡음. (안 제58조 제1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중 "제53조" 를 "제54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8조 (인계인수등) ①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58조 (인계인수등) ① 제54조-----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제천시 물품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1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윤성열 의원외 8인

1. 제 안 이 유

준칙안대로의 조례내용을 지역실정에 맞게 어구 정정하고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조정하므로써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하기 위함.

2. 주 요 골자

- 가. 지역실정에 맞게 어구정정(안 제4조)
- 나.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조정 (별표1)

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 중 "읍면동 또는 출장소의 장" 을 "사업소 및 읍면동장"으로 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의 품종구분기준 (2) 소모품 제 4항 중 "3만 원" 을 "10만 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출장소의 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p>(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종류 (생·약) ○ 품종구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품 (생·약) (2) 소모품 - ① ~ ③ (생·약) <p>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 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p>	<p>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p> <p>----- 사업소 및 읍면동장 -----</p> <p>-----</p> <p>(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종류 (현행과 같음) ○ 품종구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품 (현행과 같음) (2) 소모품 - ① ~ ③ (현행과 같음) <p>④ ----- 10만 원</p> <p>-----</p>

< 제 3 반 >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2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의자 : 이광진의원외 3인

1. 제안이유

조례 제5조 제3항 본문중 내용이 맞지 않는 납입고지서의 명칭을 정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조례 제5조 제3항 본문중 "영수보고서"를 "영수필통지서"로 개정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영수보고서"를 "영수필통지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수입) ①~② (생략)</p> <p>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p>	<p>제5조 (수입)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 ----- ----- 영수필통지서 -----.</p>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3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이광진의원외 8인

1. 제안이유

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중 현실과 내용이 맞지않은 문구를 개정,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용자대상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2. 주요골자

조례 제3조 제1항 기금의 용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자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를
“근면성실하고”로 자구 수정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새마을정신이 강하고"를 "근면성실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용자대상) ① 기금의 용자대상은 생 계가 곤란한 자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p>	<p>제3조(용자대상) ① ----- ----- 근면성실하고 ----- ----- -----</p>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4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이광진의원외 8인

1. 제안이유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사업추진시 영세민가구가 집단되어 있는 마을중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토록하는등 현실과 맞지않는 규정이 있어 이 부분을 수정코자함.

2. 주요골자

한우입식 마을을 선정한다는 조문을 삭제

조례 제5조 제2항을 삭제

(입식마을에 동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리위원회를 두어 한우입식자를 점검 및 입식자를 지도지원한다는 규정)

제천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천 시 영 세 민 자 활 자 립 을 위 한 한 우 입 식 관 리 조 례 중 다 음 과 같 이 개 정 한 다 .

제 2 조 는 다 음 과 같 이 한 다 .

제 2 조 (입 식 대 상) 시 장 은 읍 면 동 장 이 추천 하는 자 립 의 욕 이 높 은 영 세 민 가 구 중 에서 선 정 한다 .

제 3 조 중 " 입 식 마 을 의 영 세 민 에 게 " 를 " 대 상 자 에 게 " 로 한 다 .

제 5 조 중 제 2 항 을 삭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임식마을 선정) 시장은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립 의욕이 높은 영세민가구가 집단되어 있는 마을중에서 한우임식 마을을 선정한다.</p>	<p>제2조 (임식대상)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립의욕이 높은 영세민가구중에서 선정한다.</p>
<p>제3조 (임식) 시장은 출생후 4개월이 경과하고 젖을 뱉 것으로서 체중이 80kg 이상되는 암송아지(이하 "규격암송아지"라 한다)를 구입하여 선정된 임식마을의 영세민에게 1두씩 임식케 한다.</p>	<p>제3조 (임식)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대상자에게 _____ _____</p>
<p>제5조 (관리및지도감독) ① (생 략) ②임식마을에는 동·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리위원회(동·리개발위원회가 대행)를 두어 임식상태를 점검하고 임식자를 지도지원하여 자활 자립토록 한다.</p>	<p>제5조 (관리및지도감독) (현행과 같음) ② (삭 제)</p>

제천시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5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의자 : 오중환의원외 8인

1. 제안이유

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보강 코자 함.

2. 주요골자

협의회구성을 "9인 내외"를 "15인 내외"로 하고 위원대상자중 의회 의원도 포함시킴.

제천시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9인"을 "15인"으로 하고, 제4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및 의회 의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위원은 공무원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3조 (구성) ①----- ----- 15인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공무원 및 의회위원 -----</p>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6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오중환의원외 8인

1. 제안이유

'95. 12. 30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개정으로 제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이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의 제2조(복지기금조성) 제2항 제2호의 “지원 기관단체와 참여 회망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및 기타재산”이라는 조문을 삭제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2항 중 제 2호를 삭제하고 제 3호를 제 2호로 한다.

제 4조 제 2항 중 "10인니 내"를 "10인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복지기금의 조성)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복지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p> <p>1. (생 략)</p> <p>2. 지원기관단체와 참여희망자가 기탁한 <u>성금 또는 물품 및 기타재산</u></p> <p>3. (생 략)</p> <p>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10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 ⑤ (생 략)</p>	<p>제2조 (복지기금의 조성) ①(현행과 같음)</p> <p>②----- -----</p> <p>1. (현행과 같음)</p> <p>2. (삭 제)</p> <p>2.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현행 과 같음)</p> <p>②----- <u>10인</u> 이내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7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오중환의원외 8인

1. 제안이유

- 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95. 12. 29 법률 제 5113호),
동법 시행령('96. 6. 29 대통령령 제15097호) 및
동법시행규칙('96. 8. 13 건설교통부령 제76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
- 나. 특별회계의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확대

2. 주요골자

- 가. 관계법 인용조문 개정
- 나. 수입금의 사용범위 확대
 - 특정구역등에 대한 교통평가 및 이에 따른 개선대책의 시행
 - 교통수요 관리의 시행
 - 기타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등

제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 천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본문중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교통권역"을 "제2조 제3의 2호 각목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한다.

제 4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조 (세출) 이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중 부담금은 제4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5. 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등의 교통평가 및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시행
6. 법 제19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7. 기타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등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p> <p>제4조 (세출) 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장설치 차입금 상환 3.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등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5.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p>②수입금을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조 (적용범위) ----- ----- 제2조제3의2호 각목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 -----</p> <p>제4조 (세출) 이 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중 부담금은 제4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5.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 역등의 교통평가 및 이에 따른 교통 개선대책의 시행 6. 법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교통 수요관리의 시행 7. 기타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등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p>② (삭 제)</p>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8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의자 : 방홍열의원외 8인

1. 제안이유

조례 제1조의 본문중 관계법 인용조항을 바르게 정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조례 제1조(목적)중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를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로 개정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영향평가사업 및 시설의 범위를 적용하기 위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제13조 제1항 ----- ----- ----- -----

제천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9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의자 : 방홍열의원의 8인

1. 제안이유

읍면동 개발위원회의 자율성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함.

2. 주요골자

- 가.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함.
- 나.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있다"를 "없다"로 오자정정

제천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감사위원"으로 한다.

제3조중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중 "있다"를 "없다"로 하여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p> <p>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 한다.</p> <p>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겹칠 수 있다.</p>	<p>제3조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p> <p>⑤ 삭제</p> <p>⑥ ----- 없다.</p>

제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0
----------	-----

발의년월일 : 1997. 3. 29
발 의 자 : 방통열의원의 8인

1. 제안이유

리 개발위원회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을 위원중에서 호선�록 함.

2. 주요골자

- 가.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록 함
- 나. 제2조(기능) 제1호중 "이 자력"을 "리자력"으로 오자정정

제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이 자력개발에 관한사항"을 "리 자력개발에 관한사항"으로 한다.

제3조 제5항 중 "읍·면장이 위촉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기능) (생 략)</p> <p>1. 이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p> <p>2. ~ 7 (생 략)</p> <p>제3조 (구성) ① ~ ④ (생 략)</p> <p>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u>음명장이 위촉</u> <u>한다.</u></p> <p>⑥ (생 략)</p>	<p>제2조 (기능) (생 략)</p> <p>1. 이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p> <p>2. ~ 7 (생 략)</p> <p>제3조 (구성) ① ~ ④ (생 략)</p> <p>⑤ ----- <u>호선</u> <u>한다.</u></p> <p>⑥ (생 략)</p>